

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회의(97. 5. 1.) 상정 의결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회의(97. 5. 3.)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안영준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임.

나. 주요골자

-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한 목적 설명(안 제1조)
- 다목적 복지시설에는 경로당, 유치원, 청소년 교육시설, 공동작업장, 취미교실, 체육시설, 이용자편익시설,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시설장 1인 및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, 제3항)
-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(안 제8조1항)
- 시설의 위탁운영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
- 위탁계약 시 위탁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- 시설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료시설의 시설면적 비율에 따라 점유율이 많은 해당 실·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함(안 제9조제4항)
- 시설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함(안 제11조제1항)
-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 규정한 의무위반, 자격상실, 위탁조건 위반 등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(안 제12조제1항)
-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함(안 제13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안 제3조에 시설물들이 여러 부서가 해당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모두 맡아 하면 일의 효율성에서 용이하다고 봄.	○ 용이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여 현 체계가 관리운영에 편리함.
○ 조례안 9조를 보면 시장이 단독으로 위탁계약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.	○ 시장이 단독 계약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것임.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

의안번호	제258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5. 6.

제 출 자 : 환경복지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.

하기 위한 조례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나

- 조례 내용상에 있어 자문역할이나 여론수렴 창구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운영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,
- 시장이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이 아닌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이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며,
- 위탁자 선정 시 동장에게까지 권한위임시키는 것은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동한시할 염려가 있어 구청장에게까지 권한 위임시키는 것으로 수정코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안 제8조에 항 신설

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”라고 신설

- 안 제8조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.”에서 “시장에 인정하는 단체” 삭제
- 안 제17조 중 “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”를 “구청장”에게만 권한 위임.

##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수정안

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① 안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②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

안 제17조 중 “구청장 및 동장에게”를 “구청장에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8조(운영) ① (생략) (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<u>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④~⑤ (생략)</p> <p>제17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<u>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⑤~⑥ (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17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